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(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